

1-13.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통장은 실명의 개인이며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한다.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② 개인통장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9%p를 제공한다.
 1. 이 예금에서 PostPay 월 이용금액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연 0.5%p
 2. 우체국 적립식 예금을 보유한 경우 : 연 0.2%p

3. 이 예금에서 매월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2%p
 4.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일 경우 : 연 0.2%p
- ③ 사업자통장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9%p를 제공한다.
1. PostPay(제로페이 포함) 가맹점 결산기 평잔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연 0.5%p
 2.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을 보유한 경우 : 연 0.2%p
 3.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일 경우 : 연 0.2%p

(단위 : 연 %p)

구분	우대조건					이율	
개인 통장	PostPay 이용우대	이 예금에서 PostPay 간편결제·간편송금 월 합산 이용금액이 구간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0.1 ~ 0.5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0.1	0.2	0.3	0.4	0.5	
	거래 우대	우체국 적립식 예금을 보유한 경우					0.2
이 예금에서 매월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0.2		
	소상공인 우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일 경우					0.2
사업자 통장	가맹점 우대	PostPay(제로페이 포함) 간편결제 가맹점 결제계좌가 우체국 계좌로 약정이 되어 있고, 페이든든 통장 결산기간 평균 잔액 이 구간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0.1 ~ 0.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0.1	0.2	0.3	0.4	0.5	
	소상공인 우대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을 보유한 경우					0.2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일 경우					0.2		

- ④ 이 예금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 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개인통장 및 사업자통장의 우대이율 제공 조건 각 항목에 대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적용한다.

「개인통장」

- ① 「PostPay 이용우대」는 전월(1일~말일) 중 이 예금에서 PostPay를 이용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합산 이용금액이 구간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
 ※ 간편송금 : 전화번호 송금, 계좌송금, 경조송금 / 간편결제 : QR코드 · 바코드 결제
 ※ 우체국예금 본인 계좌 간 간편송금 제외, 간편결제 취소 시 실적 산정에서 제외
- ② 「거래우대의 적립식 예금 보유」는 전월(1일~말일) 중 ‘우체국 적립식 예금’ 정상 보유^주 실적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
 ※ 주) 적립식 예금 가입취소, 중도해지,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정상보유 실적 제외
 * 단, 적립식 예금 만기일이 속한 월은 정상 보유로 실적 산정
- ③ 「거래우대의 자동이체 실적」은 전월(1일~말일) 중 이 예금에서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우체국 적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 공과금 자동이체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 ④ 「소상공인 우대」는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 시 또는 가입 이후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로 확인 될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통장」

- ⑤ 「가맹점 우대」는 매 결산일에 PostPay(제로페이 포함) 간편결제 가맹점 결제계좌가 우체국계좌로 약정이 되어 있고, 페이든든통장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주이 구간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
 ※ 주) 결산기간 중 매일의 잔액의 합에 결산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⑥ 「소상공인 정기예금 보유」는 전월(1일~말일) 중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정상 보유^주 실적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
 ※ 주) ‘소상공인 정기예금’의 가입취소, 중도해지,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정상보유 실적 제외
- ⑦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은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 시 또는 가입 이후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확인 될 경우 적용한다.

제9조 【이자계산】

-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
-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 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결산기간의 평균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 【우대서비스】

- ① 이 예금 가입 시 PostPay 간편송금의 출금계좌 및 간편결제의 결제계좌 목록으로 자동 연계되는 'PostPay 자동연계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단, 이 예금 가입 이전 PostPay 가입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PostPay 간편결제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캐시백(5,000원)을 제공하는 '간편결제 웰컴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다음월 5 영업일 이내 이 예금으로 캐시백
 ※ 단, 간편결제 취소 시 캐시백은 제공되지 않으며, 캐시백 입금 시점에 이 예금이 해지되어 있는 경우 캐시백 입금 불가
 ※ 해당 서비스는 2019년 12월말까지 제공
-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